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23
----------	-------

발의연월일 : 2026. 1. 14.

발 의 자 : 차지호 · 신정훈 · 홍기원
임호선 · 김현정 · 이해식
안호영 · 김영호 · 황명선
서삼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을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

따라서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이 신청주의에만 의존함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구금 변동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보복범죄 위험이 증가하는 등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국가는 범죄피해자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범죄피해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공”을 “제공 및 제2항에 따른 안내”로 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① (생략)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 ----- ----- ----- ----- ----- <u>. 다만, 범죄피해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u>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생략) <신설>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③ -----제공 및 제2항에 따른 안내----- -----

정한다.

-----.